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0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박수영 · 강승규 · 이인선
김재섭 · 조지연 · 박충권
곽규택 · 유상범 · 김승수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 · 조선해양 · 원자력 등 산업별로 상이한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수출, 전략수출, 전략수출산업,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플랜트인프라·항공우주 등을 전략수출산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기금의 각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이를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되,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정부 외의 자에 대한 출연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근거와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기금의 관리·운용, 회계·결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자.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차.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전략수출”이란 제1호에 따른 수출로서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말한다.
3. “전략수출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 나. 선박·해양플랜트 및 그 기자재의 설계·제조와 관련된 조선·해양산업

다. 원자력발전소 및 그 설비·기자재의 수출과 관련된 원자력산업

라.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등 플랜트·인프라의 수출과 관련된 산업

마. 항공기·우주비행체 및 그 기자재의 설계·제조와 관련된 항공우주산업

바.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수출산업생태계”란 수출 산업을 구성하거나 공급망을 통해 연계되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5. “구매자금융”이란 외국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6호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책금융기관”이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략수출금융기금

제3조(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략수출산업별 구분 운용)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각 계정을 제2조제3호 각 목의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전략수출산업별 수출금융 수요, 수주 전망, 국민경제 및 수출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한도 및 용도를 심의·조정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처리할 때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및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략수출산업별 구분 관리·운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8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6.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7.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수출금융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전략수출산업별로 그 용도와 지원 규모를 구분하여 정한다.

1.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대출·보증·보험 및 구매자금융 등 수출금융 지원
2.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8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

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전략수출산업별로 그 용도와 지원 규모를 구분하여 정한다.

1.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비용

3.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회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5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한도 및 용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5조에 따른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한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4.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결산보고사항
6.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기금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으로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7조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한다

제15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5조 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④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⑧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납부받은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로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⑫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⑮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⑯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로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⑱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별표]

정부납부기술료의 범위(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받은 기술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기술료
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로서 동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납부받은 기술료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된 기술료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기술료
16.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로서 동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된 기술료
18. 「농촌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료